

이사책임 법리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

Recent Discuss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권 상 로
조선대학교

Kwon sang-ro
Chosun University

요약

주식회사의 이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책임추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I. 서론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관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이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재벌기업들이 정경유착을 통하여 많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의 책임법리와 관계되는 최근의 논의의 동향을 살펴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주식회사에는 대내적 의사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이사 그리고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 등의 기관이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에 상응한 의무를 지게 된다.

1. 이사의 권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이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대표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며 회사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이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한편 우리 상법은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 제3항). 그리고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373조 제2항). 이외에도 이사는 이사회 소집권, 각종의 소재기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사의 의무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지게 되며, 이사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를 진다.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충실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사에게는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될 비밀준수의무가 있다[2].

3.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그리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 제1항).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사가 업무집행을 신중히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다[3].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이처럼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대표소송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소수주주권이고 일본에서는 단독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Ⅲ. 결론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와 같은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이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⁵⁾.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소수주주가 직접 책임추궁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면 단독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친화적인 제소절차를 갖춘 일본의 입법례를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추궁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채권자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권자소송의 입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⁶⁾.

■ 참고 문헌 ■

- [1]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피앤씨미디어, 2016.
- [2] 권상로,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67권, pp.85-107, 2017.
- [3] 손영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pp.61-89, 2017.
- [4] 권중호, “이사책임 법리에 관한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 상사법연구, 제36권, 제2호, pp.175-206, 2017.
- [5] 송호신,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 제22집, pp.77-110, 2008.
- [6] 조지현, “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방안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집, 제1권, pp.3-22, 2015.